

기후변화 관련 최근 입법동향 및 해양수산부의 역할

박수진*

*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

Current Legisla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Rol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

Sujin Park*

* Marine Research Division, Korea Maritime Institute

핵심용어 : 기후변화, 기후변화정책, 기후변화 법제, 해양수산부

Key Words : Climate Change, Climate Change Policy, Climate Change Legislation,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

1. 파리기후협정의 채택과 주요조항

신기후체제의 채택과정

-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단일 기후대응체계 설립 합의
- 2020년 (Post-2020)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"신기후체제 협상" 4년여 진행 (2012-2015)
-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"파리기후협정" 채택

파리기후협정의 주요조항

주요조항(제3) 강구·적용·이행

2015년 11월(파리)
2016년 11월(파리)
2017년 11월(파리)
2018년 11월(파리)
2019년 11월(파리)
2020년 11월(파리)

이행점검을 위한 정보 제공

글로벌 이행점검: 5년마다 장기 목표에 대한 진전 상황 점검(제14조)

자료 : 외교부, 기후변화 바로알기, 2015, p.24
자료 : 환경부,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, p.53.

2. 기후변화 주요 법률 현황 및 동향(1)

2010.1 제정, 7개정 6개 조문

-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수립
- 중앙행정기관장 소관분야 추진 계획 수립, 보고
- 녹색경제, 녹색산업 육성, 지원
- 국제규범 대응 (제도/정책개선)
- 국무총리실하 녹색성장위원회
- 기후변화기본대응계획
- 친환경농업수산 탄소흡수원확충

2007.8 제정

- 5개정 16개 조문
- 2010.1 지속가능발전기본법
- 저탄소 녹색성장법 기본원칙과 기본계획과 조화
- 관련법령 재검토시 위원회에 발보, 환경부 산하 지속위
- 2년마다 추진상황 점검

2017.7.26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6개정 41개 조문

- 저탄소 녹색성장법 저탄소규정 이관
- 신기후체제의 체계적 대응
- 정부 시드지사는 4년마다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수립
- 총리실하 기후변화위원회 설치
-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
- 국회, 환경, 원전,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(공공건축기관)은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후변화 감시, 예측, 취약성평가
- SEA시 기후영향평가 포함
- 적응역량강화, 정부 적응시책 수립
-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
- 기후변화대응기금설치, 총리 운영

기후변화 대응법(안)

『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』 제17조(해양기후변화 대응)
『해양환경관리법』 제43장(해양에서의 대기오염물질 규제)
『연안관리법』 연안상태 조사, 연안정비사업,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·관리
『해양단계법』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계 변화에 추사함(기본계획 대상)

2. 기후변화 주요 법률 현황 및 동향 (2)

- 기타 기후변화 관련 입법동향**
 - 송옥주 의원 『**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안**』 대표발의(2017.7.27)
 - ⇒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활용, 20년 단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, 10년 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, 5년마다 재검토 의무화
 -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(위원회 위상 격상)
 -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·운영 (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)
 -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평가
 - 홍일표 의원 『**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**』 대표발의(2017.7.27)
 - ⇒ **감축대책과 동등수준의 적응대책 강조한 "파리협정" 내용 반영**, 10년 주기 국가적응기본계획 수립 시행, 적응정책협의회, 공공기관 적응계획수립/보고 의무
 - 송옥주 의원 『**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**』 대표발의(2017.7.27)
 - ⇒ 기본원칙, 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 삭제, 녹색성장위원회 → 녹색성장추진위원회
- 선박기인 오염물질 관리법(안) 제정 추진**
 - 『해양환경관리법』 상 IMO MAPOL협정 관련 규정 부분 추진
 - MAPOL 제6부서서 상 대기오염물질 규제, 선박기인 미세먼지 발생회소화 등 규율

3.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역할

해양수산부의 역할 재정립 및 정책수립

- 2015파리기후협정 채택을 계기로 신기후체제 출범, 해양수산부의 기후대응정책 점검 및 개선방향 설정
- 『기후변화대응법 제정안』, 『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』, 『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』, 해양수산부의 역할 확인 및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안 마련
- 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논의에 대응
- 『해양과 기후변화 전략적 해양행동 로드맵(2016-2021)』의 국내이행을 위한 전략 마련

향후 해양수산부의 정책이행 사항 및 개선방향

-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안** : 모든 분야에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반영(제4조), 해양수산부 시행계획 매년 수립·시행(제9조),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(제12조),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국가보고서 작성(제16조), 온실가스감축목표 부문별·단계별 대책수립 및 평가(제17조), 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목표 달성률 위한 조치 이행(제19조),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(제22조), 온실가스 감축시책(제24조), 기후변화 감시·예측·영향 및 취약성 평가/기후영향평가/적응역량 강화 및 적응시책 강구/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(제25조~제30조),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, 인력양성 시책 강구(제36조)
-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활용 및 녹색성장추진법으로 대체되는 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**
-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변화 → 해양관할권에 미치는 국내법/국제해양법적 연구, 대응방안 마련

* 주저자 : forest21@kmi.re.kr